

# 민간경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황권\* · 김일곤\*\*

## 요 약

경비업체는 다른 모든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바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비원의 법정교육 등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민간경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 법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경비원 법정교육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The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of Private Security Employees

Ahn, Hwang Kwon\* · Kim, Il G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file actual cond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operated in overseas countries and examine major consider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security service providers must know in the capacity of privacy information processor,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preventing potential occurrence of any legal disputes in advance. Particularly, this study further seeks to describe fundamental idea and principle of sai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hancement of various safety measures (e.g. collection / use of privacy data,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 personal ID information, and encryption of privacy information);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 operation of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and penal regulations as a means of countermeasure against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proposing possible solutions to cope with these matters. Using cases among foreign countries for this study.

**Key words** : Education System, Private Security Employee, Private Security, Improvement, Private Security Industry

---

접수일(2011년 5월 01일), 수정일(1차: 2011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 11일)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대구과학대학교 경호무도과

## 1. 서 론

경비업체는 다른 모든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경비업무는 경비업체의 구성원 중 주로 경비요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업체에 대한 평가는 곧 현장 경비요원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체에서는 능력이 있고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법정 교육훈련과 자체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법정 교육의 경우는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하여 법정 과목과 시간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교육은 1977년 용역경비업법 시행령(6월30일 제정, 대통령령 제8610호)과 시행규칙(11월22일 제정, 내무부령 242호)이 제정된 당시부터 신입교육과 보수교육(현재의 직무교육)이 규정되었다. 이후 신입교육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등은 1991년 2월26일 개정(내무부령 제525호), 1999년 9월21일 개정(행정자치부령 제66호), 2006년 2월2일 개정(행정자치부령 제318호), 2011년 1월26일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90호)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바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비원의 법정교육 등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민간경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 법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경비원 법정교육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경비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체계

### 2.1. 경비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종류

#### 2.1.1 경비원 교육훈련의 의의

교육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은 교육과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훈련’, ‘교육훈련’, ‘능력훈련’ 등의 단어에는 인재를 키운다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다. 훈련이 실천적 내용(What)을, 교육이 실천의 배경이 되는 원리원칙(Why)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이란 종업원의 일반적인 지식·기능·태도를 육성하는 것으로 전체적 입장에서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훈련이란 기본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 하여 익히는 것이다.

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 등은 경비업무에 관한 지식·기능·태도를 육성하는 내용뿐 아니라 체포·호신술, 장비사용법, 각 경비업무실무 및 총기조작, 총검술 등을 교수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실무에서는 혼합된 개념으로 교육훈련관리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경비원 교육훈련이란 경비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며 가치관과 태도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 2.1.2 교육훈련의 중요성

경비업은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유지·발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이 되는 능력은 직업능력 또는 직무수행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능력개발을 위한 유력한 수단인 교육훈련이다[2].

특히 경비업은 범죄예방, 화재예방, 혼잡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준공공적 성격을 지닌 생활안전업무

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새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직무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활동이 계획적으로 실시되면 경비원의 지식·기술·태도를 발전시켜서 능력개발의 기회가 주어져 직무에 만족을 갖게 되고 더욱 직무수행 능력이 발전되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체계, 교육훈련계획이 정비되고 계획적이고 제도적으로 교육훈련활동이 전개되는 등 장기적인 시점에 입각한 교육훈련활동으로서 능력개발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3].

### 2.1.3 경비원 교육훈련의 종류

#### 2.1.3.1. 대상별 분류

경비원 교육훈련은 대상자에 따라 일반경비원 교육과 특수경비원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신입자 법정교육의 경우 특수경비원은 입사전 교육이며, 일반경비원은 입사 후 2개월 이내 교육이며, 이것은 모두 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직장의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외에 회사 자체적인 교육은 성격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기초훈련, 실무훈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1.3.2. 교육성격별 분류

경비원 교육은 법정교육의 성격에 따라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입교육은 처음 채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비원들에게 직무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기존 경비원에게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수하는 것이다.

#### 2.1.3.3. 장소별 분류

교육훈련을 장소별로 나누어 보면 기업 내 훈련과 기업외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교육훈련은 기업외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시설에 해당자를 파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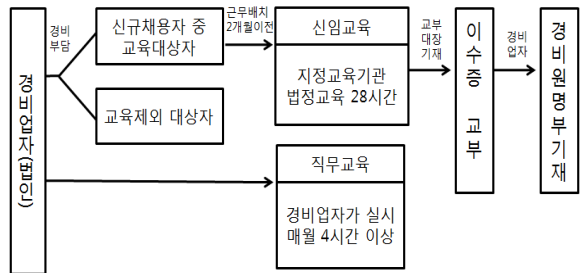
여 실시하는 교육훈련방식이다. 경비업 관련 기업의 교육훈련의 대표적인 기관은 (사)한국경비협회와 경찰청이 지정한 대학 등이다.

## 2.2. 경비원의 교육훈련체계

### 2.2.1. 일반경비원의 교육훈련체계

일반경비원의 교육은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신입교육은 신입사원층 기능직에 대한 입사 시 교육훈련이며 기업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직무교육은 기능직에 대한 기업 내 교육훈련이다.



예외:신변보호, 다툼 등 문제의 시설경비 수행자는 배치전까지 신입교육을 이수하여야함

자료: 안황권(2011),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인천: 진영사), p. 52.

(그림 1) 일반경비원 교육흐름

#### 2.2.1.1. 신입교육

##### 2.2.1.1.1. 신입교육대상자와 비용부담

일반경비업자는 교육대상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툼 등의 문제가 있는 시설에 배치된 시설경비원과 신변보호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근무배치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4].

신입교육의 대상이 되는 일반경비원은 ①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

된 사람이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입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2.1.1.2. 신입교육기관**

신입교육은 ① 경비협회, ②경찰교육기관, ③ 경비업무 관련학파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다.

**2.2.1.1.3. 교육과목 및 시간**

이론 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기타 3시간으로 총 28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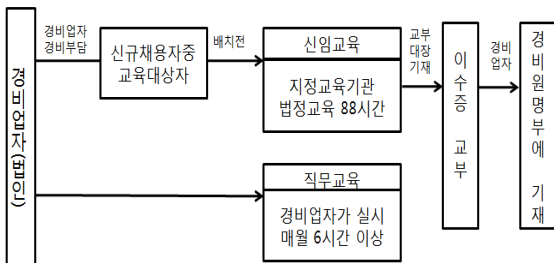
**2.2.1.2. 직무교육**

직무교육이란 근무배치 중에 있는 일반경비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비업자가 근무배치 중에 매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밖에 정신교양 등이다.

**2.2.2.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체계**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자료: 안황권(2011),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인천: 진영사), p. 52.

(그림 2) 특수경비원 교육흐름

신입교육은 신입사원층 기능직에 대한 입사전 교육 훈련이며 기업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직무교육은 기능직에 대한 기업내 교육훈련의 성격이다.

**2.2.2.1. 신입교육**

**2.2.2.1.1. 신입교육대상자와 비용부담**

특수경비업자는 다음의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입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경비원은 ①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2.2.2.1.2. 교육과목 및 시간**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은 이론교육 3과목 15시간, 실무교육 17과목 69시간, 기타 4시간으로 총 88시간이다.

**2.2.2.2. 직무교육**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2.3. 경비원 법정 교육제도의 변천**

**2.3.1. 교육제도**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문제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중요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1977년 용역경비업법 시행령(6월30일 제정, 대통령령 제8610호)과 시행규칙(11월22일 제정, 내무부령 242호)이 제정된 당시부터 신입교육과 보수교육을 규정하였다. 1990년 6월8일 개정(대통령령 제13019호)에서는 신입교육은 용역경비협회가, 보수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1996년 7월1일(대통령령 1510호)에는 보수교육의 명칭을 직무교육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에는 인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특수경비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일반경비원교육과 특수경비원교육제도를 분리하였으며, 교육기관도 협회 단독에서 복수기관을 규정하고 직무교육시간도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2.3.2. 교육과목과 시간

#### 2.3.2.1. 일반경비원의 교육과목과 시간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경비업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교육과목은 <표 1>과 같으며 교육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후 1991년 2월 26일 개정 시에는 시간은 68시간으로 동일하였으나 헌법 및 형사법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 소방은 4시간 증가, 예비는 2시간 감소되었다.

<표 1> 1976년 제정 및 1991년 개정 시 일반경비원 과목과 시간

76. 12 제정 당시			91. 2. 26 개정 당시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시간
정신교육	혼화 새마을교육	2 4	혼화 새마을교육	2 4	2 4
학술	용역경비업 관계법 정원경찰 관계법 헌법 및 형사법	5 2 10	용역경비업법관계 정원경찰관계법 헌법 및 형사법	5 2 8	5 2 8
실무	시설방호 대공이론 불심검문요령 민방위총론 민방공 화생방 소방	5 5 2 2 2 2 4	시설방호 대공이론 불심검문 요령 민방위 총론 민방공 화생방 소방	5 5 2 2 2 2 8	5 5 2 2 2 2 8
술과	기본훈련 봉술 체포술 및 호신술	5 3 3	기본훈련 봉술 체포술 및 호신술	5 3 3	5 3 3
예비	입교·졸업·평가 예비	4 8	입교·졸업·평가 예비	4 6	4 6
계		68		68	68

자료: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을 재구성함.

따라서 과목과 시간도 경비업법 관계, 헌법 및 형사법, 시설방호, 불심검문요령, 소방, 기본훈련 및 호신술 각 2시간, 입교·졸업·평가 기타가 3시간으로 총 1

5시간이었다. 이후 <표 2>와 같이 2006년 2월2일 개정(행정자치부령 제318호)에 이론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입교·졸업·수료식 3시간을 포함 28시간으로 개정하였으며, 1999년 9월21일 시행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제66호)에서는 기존 68시간을 15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표 2> 2006년 및 2011년도 개정 시 일반경원 과목과 시간

06. 2.2 개정 당시			11. 1.26 개정 당시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시간
이론교육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4	경비업법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포함)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2
실무교육	테러 대응요령	3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포함)		3
	화재대처법	2	-		
	응급처치법	3	-		
	분사기 사용법	2	장비사용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 포함)		4
	체포·호신술	3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 포함)		3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	3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 포함)		2
	-		호송경비실무		2
	-		신변보호실무		2
-		기계경비실무		2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	3	입교식·평가·수료식		3
계		28			28

자료: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을 재구성함.

2011년 1월26일의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90호)에 의해 일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이론 교육 5시간, 실무교육 20시간, 입교·졸업·수료식 3시간 포함한 28시간으로 규정되었다.

2001년 인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제도가 신설되었다. 신입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표 3>과 같다. 직무교육은 월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신설당시 80시간 이었던 교육시간을 88시간으로 확대되었다.

2.3.2.2. 특수경비원의 교육과목과 시간

<표 3> 2001년 개정 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4	-	
학과교육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법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민간경비론	2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기계경비실무	4	정신교육	2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을 포함)	4	테러 대응요령	4
	시설경비(야간경비를 포함)	6	폭발물 처리요령	6
	소방	4	화재대처법	3
	정보보호	2	응급처치법	3
	보안업무	4	분사기 사용법	3
	민방공(화생방을 포함)	6	출입통제 요령	3
	총기조작	2	예절교육	2
	총검술	4	기계경비 실무	3
	사격	12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무술교육	체포술 및 호신술	8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		총기조작	3
	-		총검술	5
	-		사격	8
	-		체포·호신술	5
	-		관찰·기록기법	3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0		88

자료: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을 재구성함.

### 3. 경비원 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 3.1. 교과목 문제

##### 3.1.1.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과목의 문제와 개선 방안

일반경비원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시설 경비 또는 호송경비 또는 신변보호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각 경비업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반경비원들은 획일적으로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 호송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실무를 공히 교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송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은 호송경비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호송경비 분야별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호송경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에 관한 실무를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예방대책의 경우 교과내용이 상이한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과목의 성격상 세 분야를 동시에 전공한 강사는 드물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치중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균등하게 할애하는 경우에도 각 1시간씩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 3.1.2.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과목의 문제와 개선 방안

현행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 과목 중 이론교육 과목인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은 8시간 교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목이다. 경찰작용 중의 하나인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청원경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특수경비원에게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는 축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 또 청원경찰법도 특수경비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따라서 과목의 명칭을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 및 관련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인 헌법은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그러나 특수경비원을 양성하고 입직시킬 때의 교육은 보다 세분화되고 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헌법을 교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 규정 포함)’은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정신교육’이란 사전적 의미로 도덕적 의식의 계발과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특히 의지의 단련, 덕성의 함양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실무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업윤리와 자세’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폭발물 처리요령’은 ‘폭발물 대처요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처리란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짓는 것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폭발물의 처리요령을 6시간에 이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폭발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위해물질을 통한 위협이 존재하므로 수상한 물건의 대처요령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3.2. 직무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과목은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업무의 특성상 일반경비원의 경우 소수가 경비현장에 분산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다고 현장마다 방문하여 1-2명의 소수에게 4시간 이상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이어서 형식적 또는 축소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비지도사의 책임 하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6개월마다 1회씩 8시간 정도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그 교육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복수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8시간 중 공통과목과 경비업무별 교육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경비원의 신입교육인 현업교육을 6개월에 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8시간 중 3시간은 공통교육을, 5시간은 경비업무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3.3. 교육시기

경비업법령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교육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기적으로”라고 하였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관행상 배치하기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3.4. 비연속교육의 문제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은 연속교육과 비연속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연속교육은 4일간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비연속교육은 전날 야간근무를 한 후 쉬지 않고 바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생의 불만이 많을 뿐 아니라 교육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임명순(2008) [5]은 위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교육생의 인권차원뿐 아니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연속교육은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3.5. 교재의 문제

경비원 신입교육교재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교육기관들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재마다 다양한 경력과 학력을 가진 집필진들이 참여하여 교재를 집필한 나머지 내용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협의체 등에서 집필진을 공모하여 표준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4. 결 론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경비업이 1953년 시작했으므로 이제 6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경비산업이 성장을 거듭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 경비요원의 자질과 윤리의식 등도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경비업은 경비요원에 의해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비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비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교육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인적자원의 능력개발수단으로서 교육훈련을 통해 경비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직무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비업무는 범죄예방, 화재예방, 위험발생예방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1977년 경비업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법정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된 후 2011년에는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의 과목과 시간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개악이 된 측면이 있다.

경비원의 교육훈련 특히 법정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비업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비원 신입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교육시기의 문제, 일반경비원 비연속교육의 문제, 교재의 문제 등을 지적한 후 그 발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1] 김문중·정승인, 인적자원관리론, 서울: 형지사, 2010.
- [2] 佐護譽, 人的資源管理概論(東京: 文眞堂), 2005.
- [3] 안황권, 민간경비인적자원관리론(인천: 진영사), 2012.
- [4]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5] 임명순, “민간경비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pp. 359-379. 2006.

## [저자소개]



**안 황 권(Ahn, Hwang-Kwon)**

1981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사  
198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現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email : ahk@kgu.ac.kr



**김 일 곤(Kim, Il-Gon)**

2004년 일본오사카체육대학원 석사  
2011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現 대구과학대학교 경호무도과  
외래교수  
email : ilgonkm@daum.net